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2
------------	-----

발의연월일 : 2016. 6. 24.

발의자 : 이종배 · 이완영 · 정우택

추경호 · 김석기 · 박인숙

정유섭 · 이우현 · 광상도

김광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을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염소의 경우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전거래 등에 의존하여 연간 거래 두수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도 가축거래상인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오리를”을 “오리·염소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 <u>오리를</u>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 ----- <u>오리·염소를</u> ----- ----- ----- ----- ----- ----- ----- -----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